

의안번호	제114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월 일 (제 297 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1월 10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4
------------	-----

제출연월일 : 2011년 1월 10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1. 제안사유

- 장학생의 자격, 추천 기준과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그 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

### 2. 주요내용

- 장학생의 자격기준과 추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 제3조)
- 장학생 선발 정원을 대원의 100분의 5 이내로 정비함(안 제5조)
- 공납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화 하고 지급금액 조정함(안 제6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4조)
  - 목적 조항 약칭 금지에 따라 약칭 삭제 및 간소화 함(안 제1조)
  - 목적 조항 약칭 금지에 따라 약칭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인용법령 표기, “자”를 “사람”으로 “에 의하여”를 “에 따라”으로 변경
-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4조, 제5조, 제8조)

### 3. 의안전문 : 붙 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붙 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 전문의용소방대원, 전담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3년 이상 근속한(타 지역 경력을 포함하며, 신설 의용소방대는 제외한다) 대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재학중인 학교장이나 대학 학장 또는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방활동 유공으로 자치단체장 이상 또는 소방서장 이상 소방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로서 소속 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

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추천) 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 구역의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을 말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별로 선정하여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을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로,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를 “순위에 따라”로 “1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학교간 지역간의”를 “지역간의”로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와 타 장학금 지급받은 자는”을 “고등학생은 3년 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도지사에게 즉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5/100”를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공납금”을 “공납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경비 등을 포함한다)”로,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를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로 한다.

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제14조에 해당 한 때 단,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4. 대원이 원에 의해 사직한 때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여성대원,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공·사립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대원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장학생의 자격)</b>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3년 이상(타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장학생의 자격)</b>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 전문의용소방대원, 전담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으로 3년 이상 근속한 타 지역 경력을 포함하며, 신설 의용소방대는 제외한다) 대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 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학교장이나 대학 회장 또는 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3. 소방활동 유공으로 자치단체장 이상 또는 소방서장 이상 소방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b>&lt;신 설&gt;</b>	4.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원의 자녀로서 소속 의용소방대장(여성의용소방대장, 지역의 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 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b>제3조(추천)</b> 의용소방대장은 제 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방서관할 구역별 정원의 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b>제3조(추천)</b> 대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소방서 관할 구역의 의용소방대(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을 말한다. 이하 “의 소대”라 한다)별로 선정하여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b>제4조(선발)</b> ① 소방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b>제4조(선발)</b>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p>1. ~ 7. (<u>생 략</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u>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기간 중 동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와 타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u> 다만, 지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소방서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u></p>	<p>1. ~ 7. (<u>현행과 같음</u>)</p> <p>② <u>제1항에 따라</u>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u>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등학생은 3년 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u> 다만, 지급 대상자가 없을 경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소방서장은 제 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u>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u>에게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5조(장학생의 정원)</b> ①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수의 <u>5/100</u>로 한다.</p> <p>② (<u>생 략</u>)</p>	<p><b>제5조(장학생의 정원)</b> ①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수의 <u>100분의 5</u> 이내로 한다.</p> <p>② (<u>현행과 같음</u>)</p>
<p><b>제6조(장학금액)</b>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u>공납금 전액</u>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u>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 최고금액의 120퍼센트</u>로 한다.</p>	<p><b>제6조(장학금액)</b>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u>공납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경비 등을 포함한다)</u>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u>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최고금액의 120퍼센트</u> 이내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지급의 정지) ① (생 략)</b></p> <p>1. <u>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 14조</u>  <u>(해임사유)의 규정에 해당한 때</u></p> <p>2. <u>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u>  <u>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u></p> <p><b>&lt;신 설&gt;</b></p> <p><b>&lt;신 설&gt;</b></p> <p>② 소방서장은 제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u>지체없이</u>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b>제8조(지급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b></p> <p>1.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제 14조에 해당한 때 단,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p> <p>2. <u>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u>  <u>받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u></p> <p>3. <u>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u>  <u>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u></p> <p>4. <u>대원이 원에 의해 사직한 때</u></p> <p>② 소방서장은 제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u>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u>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 관련법령 발췌

###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제22조(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자녀장학금,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의소대의 장비관리비, 그 밖에 의소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 편성하여야 하며, 시·군에서는 의소대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